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 안 번 호 1869

제안년월일: 2020년 9월 4일 제 안 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이광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1508)과 김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(의안번호:제1706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
-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내용을 수정· 통합하여 「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(대안)」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사유

○ 에너지 관련 법령의 제·개정 및 다양한 에너지사업 환경변화에 서울에너지 공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또한 집단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가의 옥내 노후배관 교체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환경·에너지 분야 사업추진 시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열거된 조문을 새로운 법령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,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에 맞춰 용어를 변경함.
- 나. 태양광, 수소 등 에너지 간 융·복합 등의 신사업 분야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공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이 인정 사업 항목을 신설함.
- 다. 노후 사용가 시설 교체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.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
- 2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사업
- 3.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
- 4. 환경·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
- 5.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
- 6. 「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능 형전력망 사업
- 7. 「전기사업법」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
- 8.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
-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업의 부대사업(교육홍보, 연구개발, 국내외 협력,

부동산 거래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)

- 10.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
- 11. 집단에너지 노후 사용시설 교체지원 사업
- 1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
- 13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했 개 정 안 제20조(사업)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제20조(사업) ① -----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 따른 집 1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 따른 집단 단에너지사업 에너지사업 2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 2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 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·재생 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·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 관련 사업 3.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제25조제 3.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25조제 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32조에 따른 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 4. 확경·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4. 환경·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영 운영 5.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5.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배출권 관련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 사업 6.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

등과 관련된 사업

운영·대여 및 양도

7. 제1호부터 제6호 관련 조사, 연구.

양성을 위한 산·학·연 협력사업

8. 제1호부터 제7호 사업을 위한

토지·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·설치·

개발, 교육, 홍보 및 컨설팅, 전문인력

- 6. 「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
- 7. 「전기사업법」제2조에 따른 전기 신사업
- 8.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

현 행	개 정 안
9. 제1호부터 제8호 관련 국내외	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업의 부대
협력 및 교류사업	사업(교육홍보, 연구개발, 국내외 협력,
	부동산 거래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)
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	10.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
딸린 사업	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
1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	11. 집단에너지 노후 사용시설 교체
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	지원 사업
	1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
	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
	13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2 (78° 47)	② (184 年日)